

학생활동안전관리및처리에관한규정

2019.05.29.제정 2021.06.01.일부개정 2023.09.01.일부개정

<학생·장학봉사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소속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본부, 단과대학, 학과 등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종 학생단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,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학생자치기구”란 본 대학교 소속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, 각 단과대학 학생회, 각 학부(과)학생회, 총동아리연합회, 총대의원회, 외국인유학생회 등 우리 대학교가 승인한 학생단체를 말한다.
- ② “학생단체 행사”란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본부 등이 주관하여 교내·외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각 학생자치기구, 대학본부 등 학생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본 대학교 각 행정부서 및 관련 교직원, 학생에 적용된다.

제4조(학생단체 행사 안전관리책임자) 본 대학교의 학생단체 행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(이하“총괄책임자”라 한다)는 학생처장이 되며, 안전관리 분임책임자(이하 “분임책임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 (**개정** 2021.6.1., **2023.9.1.**)

1. 대학본부 : 해당 부서 부서장
2.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, 총동아리연합회, 총대의원회 주관행사 : 학생처장
3. 단과대학 학생회 및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 주관행사 : 각 단과대학장
4. 학부(과) 주관행사 : 각 학부(과)장
5. 외국인유학생회 주관행사 : **국제교류처장**
6. 그 밖의 학생단체행사 : 해당 행정부서장

제5조(안전관리 예방계획의 수립) ① 모든 학생단체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

2.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안전교육
3. 행사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
4.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방안 및 연락망
5.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6조(행사의 신청 및 승인) 각 학생자치기구가 교내·외에서 학생단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 계획서 혹은 기획서를 작성하여 행사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소관 분임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불허 및 취소 사유) ① 분임책임자는 해당 학생회가 신청한 학생단체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.

1. 본 대학교의 이념, 학칙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
 2. 학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
 3. 대학교육의 이념에 반하거나, 학생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중립성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으로 여겨지는 경우
 4. 그 밖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
- ② 학생단체 행사가 허가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학생안전지도) ① 분임책임자 혹은 그가 지명하는 교직원은 학생단체 행사에 참가 및 동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분임책임자 및 그가 지명하는 교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1. 학생단체 행사의 취지 및 행동강령
 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
 3. 질서유지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
 4.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방안 및 연락망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9조(사전답사) ① 대학본부 및 학생자치기구 등이 주관하는 대규모 학생단체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, 분임책임자가 지명하는 교직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자치기구의 학생대표는 행사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임책임자 혹은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고조사 및 보고) ① 분임책임자는 각종 학생단체 행사에 즈음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,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사고 개요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 후,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분임책임자는 사고수습 후에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안전사고수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총

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총괄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고대책위원회 구성) ① 각종 학생단체 행사에 분임책임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의 판단에 따라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고대책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분임책임자 및 총장이 임명하는 수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각종 안전수칙, 메뉴얼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